

대구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264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환, 김영일

피고, 피항소인 1. B주식회사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각연, 이종우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5. 28.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11. 10. 선고 2019가합1003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E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337,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밑에서 제9행의 ‘2013. 12. 31.경’을 ‘2013. 5. 9.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들의 제척기간 경과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985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1, 3 내지 22,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 6, 8, 9, 10, 12, 19, 20, 21, 22, 24, 42, 46, 48, 6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17. 11. 27.경 무렵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도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사해행위를 한 E의 사해의사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9. 2. 22.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① F은 경남 합천군 Q 일원에서 양계장(이하 Q 및 그 지상의 양계장을 ‘합천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0. 1.경 E을 설립하였다. E은 2011.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 2012. 2.경 경남 거창군 R 일원, 2013. 4.경 김천시 S 일원을 각 취득하였고, 그 무렵 위 각 토지 위에 양계장을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그 지상의 양계장을 ‘청송농장’, R 및 그 지상의 양계장을 ‘거창농장’, S 및 그 지상의 양계장을 ‘김천농장’이라 한다).

② F 및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송농장 등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사업 부진, 과도한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F은 2013. 10.경 채무 초과 상태가 되었고, 그 무렵 E의 경영상태 또한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에 F은 2015. 2. 2. T 주식회사에 합천농장을 매도하였고, E은 2014. 3. 17. 피고 B에 이 사건 각 부동산, 같은 해 10. 15. U주식회사에 거창농장을 각 매도하였다.

③ 나아가 E은 2017. 7. 12. V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E이 위 법인에 유일하게 남은 김천농장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매매잔금은 곧바로 지급받지 않고 E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하기로 위 법인과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8. 9. 김천농장을 매수하고자 하였던 위 법인으로부터 김천농장의 매도대금 중 1억 원을 직접 변제받았고, 위 법인의 요청으로 그에 관한 영수증도 작성해 주었다. 위 법인은 2017. 8. 30. 김천농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E에 대한 대여원리금이 최소 3억 3,3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2017. 8. 9. 김천농장의 매수예정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남은 대여원리금의 회수가능성, 회수시기 및 방법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땅히 그 무렵 등기부열람 등을 통하여 청송농장을 비롯한 E의 다른 자산 보유 여부, 채무 부담상황 등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⑤ F은 2017. 11. 27. 원고 명의로 'F 및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12. 31.자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7차6098)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하였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명의의 지급명령을 받아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이에 대하여 F은 제1심법정에서 '지급명령 신청 당시 원고는 증인 F이나 E이 변제 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뭐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독촉하였고(녹취록 제14쪽), 그에 따라 증인 F이 원고의 명의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⑥ 위와 같이 원고가 2017. 8. 9. 김천농장의 매수예정자로부터 김천농장의 매도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1. 27. F에게 추가적인 채권회수방안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12. 5.

지급명령이라는 간소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하여 E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17. 11. 27.에는 E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고는 지급명령 확정 이후 한동안 E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2018. 말경 F의 조언에 따라 E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 경과를 참고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판단된다.

⑦ F은 피고 B의 대표자 사내이사 P과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위 매매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사이가 매우 악화되었고, E 내지 F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고 B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회복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언을 하였다.

이러한 조언에 따라 E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K은 피고 B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가합375)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6. 13.경 F에게 ‘원고는 2013. 12. 31.까지 E에 2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확인서가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되었다. 원고는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F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F이 원고에게 확인서의 작성을 부탁하였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작성을 해 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2015. 6. 13.경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사실 및 E의 채무 초과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가정적 판단

한편, 설령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의 E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①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어도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 원고의 E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관련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대부분을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가 E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2011. 12. 29. 1,800만 원, 2012. 2. 14. 1,000만 원에 불과하다(한편 E은 원고의 계좌로 2012. 1. 31. 2,850만 원, 같은 해 2. 24. 1,530만 원, 같은 해 6. 20. 30만 원, 같은 해 8. 27. 4,0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E에 대한 정확한 채권액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 ‘원고로서는 거래당사자가 F 개인인지, 회사인 E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저 F의 요청으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F은 제1심법정에서 원고와의 대차거래에 대하여 ‘제가 개인통장으로 돈을 빌려서 E에다가 돈을 차입하였습니다. 제가 바쁠 때 원고에게 바로 E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E이

저로부터 가수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E에 돈이 생기면 제가 그것을 받아 다시 나누어주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E이 직접 돈을 빌리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관계가 되니,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서 E에 넣고, E으로부터 받아서 원고 등에게 갚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녹취록 제11 내지 13쪽). 위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E에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F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고, F이 다시 E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므로, E에 대한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F이 된다.

④ 원고는 '대여금: 2억 원, 변제기한: 2014. 12. 31. 이율: 월 1.5%, 이자: 선불, 매달 31일 지급, 작성일자: 2013. 12. 31. 차용인: F, E1)'으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2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i) F의 위와 같은 증언내용, ii) 위 차용증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되고 약 15개월이 지난 2020. 5. 11.에서야 제출된 점, iii) P은 원고가 허위의 채권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대구지방법검찰청 2020형제18969호), 원고는 위 사건의 경찰조사과정에서도 위 차용증이 존재하다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위 차용증은 이 사건 소송 중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명, 판사 사공민, 판사 정신구

별 지 목 록

1. 경상북도 청송군 입야 39882㎡1. 경상북도 청송군 입야 6580㎡1. 경상북도 청송군 전 1187㎡1. 경상북도 청송군 입야 25477㎡1. 경상북도 청송군 전 1385㎡1. 경상북도 청송군 전 436㎡1. 경상북도 청송군 전 1170㎡1. 경상북도 청송군 전 1147㎡1. 경상북도 청송군 입야 1524㎡1. 경상북도 청송군 파수원 182㎡1. 경상북도 청송군 파수원 128㎡1. 경상북도 청송군 전 221㎡1. 경상북도 청송군 전 969㎡1. 경상북도 청송군 입야 74㎡1. 경상북도 청송군 입야 769㎡1. 경상북도 청송군 호

강파이프구조 칼라강관지붕 단층 양계장 1624㎡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기계실 8.1㎡

1. 경상북도 청송군 호

강파이프구조 칼라강관지붕 단층 양계장 1722㎡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기계실 8.1㎡

1. 경상북도 청송군

호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양계장 1722㎡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기계실 8.1㎡

1. 경상북도 청송군

호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양계장 1736㎡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기계실 8.1㎡

1. 경상북도 청송군

호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양계장 1736㎡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기계실 8.1㎡

1. 경상북도 청송군

호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양계장 1764㎡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기계실 8.1㎡

1. 경상북도 청송군

호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양계장 1764㎡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기계실 8.1㎡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2.2㎡

1. 경상북도 청송군

호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양계장 1764㎡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기계실 8.1㎡

1. 경상북도 청송군 [] [] [] [] [] [] []

[]호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양계장 1246㎡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기계실 8.1㎡

1. 경상북도 청송군 [] [] [] [] [] [] []

[]호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양계장 1008㎡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기계실 10.8㎡

1. 경상북도 청송군 [] [] [] [] [] [] []

[]호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양계장 1400㎡

1. 경상북도 청송군 [] 대 991㎡

1. 경상북도 청송군 []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45.84㎡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층

사무소 52.2㎡ 끝.

1)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408조), 위 차용증에 의하더라도 E이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